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46
----------	------

제출일자 : 2023. 2.
제 출 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 가. 자연휴양림 연중무휴 운영에 따른 시설 정비의 어려움 및 근무자들의 피로도 상승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 나.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위약금 환불 기준을 마련하고 숙박 정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다. 자연휴양림 이용신청 시 산림문화 통합예약시스템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객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고자 함
- 라. 자연휴양림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정확한 가격산출을 하기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마. 산림휴양시설 통합관리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계정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 바. 자연휴양림 부정예약 방지를 위한 예약사항의 가족 외 타인에게 매매·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의 신설을 위하여 현행 조례 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사. 화원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사용 요청 접수 시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인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휴관일 지정 신설(안 제4조)
- 나.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용어 수정 및 추가 (제 4조)
- 다. 휴양림 위약금 규정신설(안 제9조 및 별표 3)
- 라. 자연휴양림 이용신청 (안 제11조)
- 마. 자연휴양림 손해배상(안 제12조)
- 바.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및 운영 신설(안 제13조)
- 사. 관리자 예약 및 매매·교환 등 금지 신설(안 제14조)
- 아.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의 매매·교환 등의 금지조항 신설(안 제15조)
- 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인원 및 사용금액 규정 개정 (안 별표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2)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3. 1. 5. ~ 1. 25.)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요일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를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를 “일부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나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를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를 “취득가액 또는 시장가액으로 변상을 하여야 하고, 변상을 받은 경우 관리운영자는 그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운영은 주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해당 예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약자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우선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제4조(휴관일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설> 1. ~ 6. (생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단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u>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u>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휴관일 등) ① (현행과 같음) <u>1. 화요일</u> 2. ~ 7. (현행과 같음) ③ ----- ----- ----- ----- ----- <u>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u> -----.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u>일부를 위약금</u> 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 ----- ----- <u>일부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u> ----- -----.
제11조(이용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u>공단 홈페이지나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u>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① ----- ----- - <u>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u>

제12조(손해배상)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손해배상) -----

-----취득가액
또는 시장가액으로 변상을 하여야
하고, 변상을 받은 경우 관리운영
자는 그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입
금하여야 한다.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
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
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
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
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
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
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
정·운영은 주중을 원칙으로 하되 부
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

<신설>

말에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신설>

제15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 제16조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해당 예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약자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6조 ~ 제19조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별표1]							[별표1]								
2.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2.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비고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비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숲속의 집	콘도 (1,2)	A형 (30㎡)	1박	90,000	60,000	5인		숲속의 집	콘도 (1,2)	A형 (30㎡)	1박	90,000	60,000	5인	
		B형 (60㎡)	1박	160,000	110,000	10인				B형 (60㎡)	1박	160,000	110,000	9인	
	통나무집	A형 (29㎡)	1박	90,000	60,000	5인			통나무집	A형 (29㎡)	1박	90,000	60,000	4인	
		B형 (67㎡)	1박	180,000	120,000	11인				B형 (67㎡)	1박	180,000	120,000	10인	
청소년수련관		A형 (21㎡)	1박	70,000	50,000	4인		청소년수련관		A형 (21㎡)	1박	70,000	50,000	4인	
		B형 (96㎡)	1박	200,000	140,000	19인				B형 (96㎡)	1박	200,000	140,000	16인	
세미나실		196㎡	4시간	200,000	150,000	120인		세미나실		196㎡	4시간	200,000	150,000	120인	

현행										개정안									
[별표1] 3.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										[별표1] 3.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사용 기준	사용료(원)				기준 인원	비고	구분		사용 기준	사용료(원)				기준 인원	비고		
			성수기 (주중, 주말 불문)	비수기		성수기 (주중, 주말 불문)						비수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카라반	두루미	1박	100,000	60,000	80,000	4인			카라반	두루미	1박	100,000	60,000	80,000	4인				
	이팝나무	1박	120,000	80,000	100,000	6인				이팝나무	1박	120,000	80,000	100,000	6인				
	참꽃	1박	140,000	100,000	120,000	10인				참꽃	1박	140,000	100,000	120,000	8인				
캠핑 테크	소	7x4	1조/1박	30,000	15,000	20,000			캠핑 테크	소	7x4	1조/1박	30,000	15,000	20,000				
	대	8x5		40,000	20,000	30,000				대	8x5		40,000	20,000	30,000				
기타	비누, 수건 등 세면도구와 휴대용가스버너, 고기불판은 시설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단, 숯불사용금지)									기타	비누, 수건 등 세면도구와 휴대용가스버너, 고기불판은 시설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단, 숯불사용금지)								

현행								개정안							
[별표1]								[별표1]							
4. 화원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4. 화원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사용 기준	사 용 료(원)		기준 인원	비 고	구분			사용 기준	사 용 료(원)		기준 인원	비 고
				상수기 (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 의 주중							상수기 (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 의 주중		
숲속의 집	숲속의 집	A형 (50㎡)	1박	140,000	100,000	9인		숲속의 집	숲속의 집	A형 (50㎡)	1박	140,000	100,000	8인	
		B형 (68㎡)	1박	180,000	130,000	12인					1박	180,000	130,000	10인	
산림 문화 휴양 관	휴양 관	A형 (29㎡)	1박	90,000	60,000	5인		산림 문화 휴양 관	휴양 관	A형 (29㎡)	1박	90,000	60,000	4인	
		B형 (101㎡)	1박	240,000	170,000	19인	-			B형 (101㎡)	1박	240,000	170,000	16인	-
									세 미 나 실	(120㎡)	4시간	120,000	80,000	30인	-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3] 위약금 공제 기준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공제 기준</th><th rowspan="2">비고</th></tr><tr><th>주 중</th><th>주 말</th></tr><tr><td rowspan="5">성수기</td><td>- 사용예정일 10일전</td><td>총 요금 환급</td><td>총 요금 환급</td><td rowspan="5">-</td></tr><tr><td>- 사용예정일 7일전</td><td>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td><td>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td></tr><tr><td>- 사용예정일 5일전</td><td>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td><td>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td></tr><tr><td>- 사용예정일 3일전</td><td>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td><td>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td></tr><tr><td>- 사용예정일 1일전</td><td>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td><td>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td></tr><tr><td rowspan="3">비수기</td><td>- 사용예정일 2일전</td><td>총 요금 환급</td><td>총 요금 환급</td><td rowspan="3">-</td></tr><tr><td>- 사용예정일 1일전</td><td>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td><td>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td></tr><tr><td>- 사용예정 당일</td><td>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td><td>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td></tr></table>	구분		공제 기준		비고	주 중	주 말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7일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구분				공제 기준			비고																												
		주 중	주 말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7일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